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0. 10.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목 차

I. 2020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 1

## II.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 3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 24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42

## III.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62

## IV.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73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 74  
3.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관련 전산매체 설명자료 .. 75

# 목 차

## V.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 소개 ...	82
2. 전자문서 API 이용 안내 .....	82
3. 전자문서 API 종류 .....	84
4.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문서 파일 활용 .....	85
5. 2020년 귀속 전자문서 정의서 변경사항 .....	85
<b>&lt;참고&gt; 편리한 연말정산 .....</b>	<b>86</b>

# I. 2020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레코드 수록요령 및 오류검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해당 항목에 **음영처리** 또는 **굵게(밑줄)**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내용에 대한 변경 내용은 정오표를 참조)

\* 전산매체제출요령 홈페이지 게시 위치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자료실 →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주(현) · 종(전) 레코드

- 비과세소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감면소득: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항목 추가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설정
-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특별세액공제: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 실효세율 항목 추가

### 소득 · 세액 공제명세 레코드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입력방법 변경(기간별로 구분하여 입력)

## 2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사업연말 주(현) 레코드 항목설명 및 오류검증기준 변경사항
  - 연금계좌 세액 공제 금액 기준 변경
  - 자녀세액공제 인원 항목설명 변경

##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변경사항 없음

##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변경사항 없음

## 5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종교인소득 관련 과세체계 및 전산매체 제출요령

## 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input type="radio"/> 육아휴직 급여·수당 <input type="radi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input type="radio"/>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margin-left: 10px;">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div>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47)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1,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4,500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500만~1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margin-left: 10px;">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공제 한도 : 2,000만원                 </div>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대상 <input type="radio"/>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상 조정 <input type="radio"/> (좌 동) - <삭 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소득령 §38)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의 범위 <input type="radio"/>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input type="radio"/>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종 전	개 정
<p>□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p> <p>○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p> <p>○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p> <p>○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p> <p>○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p> <p>○ 추가 납입 방법 :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 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p>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소득령 §17)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소득령 §79)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input type="checkbox"/>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input type="checkbox"/>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input type="checkbox"/>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득령 §106)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input type="checkbox"/>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소득규칙 §93)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근로소득세표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공제 한도(2천만원) 반영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월급여 구분	세액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28백만원 ~ 30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6,58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249,600원+(4,500만원 초과금액*98%*42%)	30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7,385,600원+(3,000만원 초과금액*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13,385,600원+(4,500만원 초과금액*42%)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인상 ○ 2% → 5%

<적용시기> '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령 §12제9호, 소득칙 §6의5)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항공수당 ○ 함정근무수당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과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	<input type="checkbox"/>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함정근무수당 (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 (좌 동)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3)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li> <li>○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li> <li>○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li> </ul>	<p><input type="checkbox"/> 제출기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우정사업본부 추가</li> <li>○ (좌 동)</li> </ul>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input type="checkbox"/>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input type="checkbox"/> (한도) 연간 2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행사가액) <input type="checkbox"/>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2)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18의3)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 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input type="checkbox"/>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 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li> <li>○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li> <li>○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lt;추 가&gt;</li> <li>○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li> <li>○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li> <li>○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li> <li>○ (적용기한) 2021.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li> <li>○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 (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li> <li>*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8.12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li> </ul> </li> <li>○ (좌 동)</li> </ul>

<적용시기> 20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조특법 §30)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좌 동)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86의4)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신 설>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신 설>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p>○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p> <p>○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 15%</li> <li>-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li> <li>-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li> <li>-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li> </ul> <p>○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p> <p>○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019.12.31.</p>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p>□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p> <p>○ (좌 동)</p> <p>○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li> <li>- (좌 동)</li> </ul> <p>○ (좌 동)</p> <p>○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 : 100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022.12.31.</p>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p>○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p> <p>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p> <p>○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p> <p>    - 도서·공연 :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p> <p>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p> <p>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p> <p>    ※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p>	<p><input type="checkbox"/>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p> <p>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p>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8)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조특법 §16)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p> <p>○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p> <p>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p> <p>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p>	<p><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p> <p>○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p> <p>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p>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7)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radio"/>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input type="radio"/>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input type="radio"/>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input type="radio"/>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5px 0;"> <input type="radio"/> (좌 동)                 </div> <input type="radio"/>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0)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박물관·미술관 : 7,500만원 - 신문구독료 : (2021년 시행 예정)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20.3.23.)	개 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50%;">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body> </table> <p>*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li> <li>○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항목</th> <th style="width: 50%;">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22.12.31.</li> </ul>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p>□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12.5%;">3월</th> <th style="width: 12.5%;">4~7월</th> <th style="width: 12.5%;">8~12월</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금영수증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시장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20. 2월</th> <th>3월</th> <th>4~7월</th> <th>'20. 8월~</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d>30%</td> <td></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30%</td> <td>60%</td> <td>8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30%</td> <td>60%</td> <td></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d>80%</td> <td></td> <td>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 원 이하</td> <td>300만 원</td> </tr> <tr> <td>7천만 원~1.2억 원</td> <td>250만 원</td> </tr> <tr> <td>1.2억 원 초과</td> <td>200만 원</td> </tr> </tbody> </table> <p>*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22.12.31.</li> </ul>	구 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8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p>□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 기준</th> <th colspan="2">한도</th> </tr> <tr> <th>'20년</th> <th>'21·'22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 원 이하</td> <td><b>330만 원</b></td> <td>300만 원</td> </tr> <tr> <td>7천만 원~1.2억 원</td> <td><b>280만 원</b></td> <td>250만 원</td> </tr> <tr> <td>1.2억 원 초과</td> <td><b>230만 원</b></td> <td>200만 원</td> </tr> </tbody> </table> <p>*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b>330만 원</b>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b>280만 원</b>	250만 원	1.2억 원 초과	<b>230만 원</b>	200만 원
구 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8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b>330만 원</b>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b>280만 원</b>	250만 원																																														
1.2억 원 초과	<b>230만 원</b>	200만 원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p> <p>○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p> <p style="margin-left: 20px;">* 산출세액 × <math>\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math></p> <p>-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p>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p> <p>○ (좌 동)</p> <p>- 5년 → 10년</p> <p>-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p>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165, §174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p> <p>○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p> <p>*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p> <p>※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p><input type="checkbox"/>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p> <p>○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p>	<p><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b>&lt;삭 제&gt;</b></p>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근로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li> <li>○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li> <li>○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li> <li>○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li> <li>○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추 가&gt;</b></p>	<p><input type="checkbox"/>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li> </ul> <p style="font-size: small;">*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p>

<개정이유> 복리후생적 급여의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명확화

(5)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li>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li> <li>-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li> </ul> </li> <li>○ (월세액 한도) 750만 원</li> </ul>	<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4,000만 원 → 4,500만 원</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 저축공제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주 택 자 금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p>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p> <p>공제 한도액</p>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50%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80%	·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2월</th> <th>3월</th> <th>4~7월</th> <th>8~12월</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d>30%</td> <td rowspan="3">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td> <td>30%</td> <td>6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td> <td>30%</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d>80%</td> <td></td> <td>40%</td> </tr> </tbody> </table>	구 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구 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중고차 신용카드 등 구입금액은 10%를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소득은 제한,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 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630만원)																										
우리아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아주조합원이 우리아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아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중견 기업 3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p>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p> <p>-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p>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p>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p> <p>연 150만원 한도</p>	<p>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 ~ '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5년간) 70%(청년 90%) 감면</p> <p>* 청년 감면율의 적용</p> <p>- '12~'13년 취업청년 : 100%</p> <p>- '14~'15년 취업자 : 50%</p> <p>- '16~'17년 취업자 : 70%</p> <p>- '18년 이후 소득 : 90%</p>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table border="1"> <tr> <th>산출세액</th> <th>공제금액</th> </tr> <tr> <td>13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able>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p>&lt;공제한도&gt;</p> <p>·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b>74만원</b></p> <p>·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b>66만원</b></p> <p>·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b>50만원</b></p>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7세이상)	-	<p>1명 : 연 15만원</p> <p>2명 : 연 30만원</p> <p>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p>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연금저축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총급여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rowspan="2">공제율</th> </tr> <tr>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r> <tr> <td rowspan="2">55천만원 1.2억원 이하</td> <td>400만원 (700만원)</td> <td>600만원 (9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300만원 (700만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r> </table>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p>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 한도)</p>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퇴직연금	<table border="1"> <tr> <th>총급여액</th>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h>공제율</th> </tr> <tr> <td rowspan="2">1.2억원 이하</td> <td>400만원 (700만원)</td> <td>600만원 (9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300만원 (700만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r> </table>	총급여액	50세미만	50세이상	공제율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p>			
총급여액	50세미만	50세이상	공제율												
1.2억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과학기술인 공제	<table border="1"> <tr> <th>총급여액</th>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h>공제율</th> </tr> <tr> <td>1.2억원 초과</td> <td>300만원 (700만원)</td> <td>300만원 (700만원)</td> <td>12%</td> </tr> </table>	총급여액	50세미만	50세이상	공제율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p>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p>					
총급여액	50세미만	50세이상	공제율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12%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2%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료 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20%**)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그 외 부양가족			**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세액 공제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공제대상 한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 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 \* (소득세법 제59조의4④)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2013년에 지급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먼저 공제
- \* (소득세법 제59조의4⑨)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기부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계산 방법

※ 기부금 관련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공제 구분	공제 항목	내용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13년 지출분 중 이월된 기부금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과 '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1)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계산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법정기부금(2013~2020년 지출분)
-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④ 지정기부금(2013~2020년 지출분)

(2)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이월 법정기부금(2014~2019) → ③ 당해연도 법정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이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014~2019) → ⑥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⑦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2014~2019)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3)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액 한도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정치자금 기부금	소계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0원 ㉠ + ㉡ + ㉢	0원 a + b + c	
	10만원 이하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10만원)	㉠ 0원 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소계		0원	0원 ㉡ + ㉢	0원 b + c
		10만원 ~ 3천만원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3천만원) - 10만원, 0}	㉡ 0원 대상금액 × 15%
		3천만원 초과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 3천만원, 0}	㉢ 0원 대상금액 × 25%
②법정 기부금	소계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0원 ㉠ + ㉡ + ㉢	0원 a + b + c	
	'14~'15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년 이월분 ~ 당기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 - ㉡)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30%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법정기부금 포함)	0원 Min(입력금액, 한도)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④지정 기부금	소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30%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법정기부금 포함)	0원 ㉠ + ㉡ + ㉢	0원 a + b + c	
	종교 단체외 기부금	'14~'15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6~'18년 이월분	0원		㉞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㉟ + ㉜) ㉟ 2천만원 이하 : 15% ㉜ 2천만원 초과 : 30%
	'19년 이월분 ~당기분	0원		㉞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㉝)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㉟ + ㉜) ㉟ 1천만원 이하 : 15% ㉜ 1천만원 초과 : 30%
소계		0원		0원 ㉟ + ㉝ + ㉞	0원 a + b + c
종교 단체 기부금	'14~'15년 이월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10%	㉟ 0원 Min(입력금액, 한도)	㉟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㉟ + ㉜) ㉟ 3천만원 이하 : 15% ㉜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 이월분	0원	+ Min((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법정기부금 포함)	㉞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㉟ + ㉜) ㉟ 2천만원 이하 : 15% ㉜ 2천만원 초과 : 30%
	'19년 이월분 ~당기분	0원		㉞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㉝)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액 (㉟ + ㉜) ㉟ 1천만원 이하 : 15% ㉜ 1천만원 초과 : 30%

#### (4) 지급명세서 기재 방법

- 1) '13년 이월 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재
- 2)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기재
- 3) 세액공제액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초과분 구분 기재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의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기재

#### (5) 기부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차기 이월됨

사례) 소득금액 70,000,000원, 기부금액 전체 5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1) 기부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이월액 계산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구 분		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초과 이월액
법정	당기	5,000,000	70,000,000	5,000,000	
	'15년이월	3,000,000		3,000,000	
	'18년이월	2,000,000		2,000,000	
우리사주		20,000,000	18,000,000	18,000,000	
지정 종교외	당기	3,000,000	12,200,000	3,000,000	
	'15년이월	2,000,000		2,000,000	
	'18년이월	3,000,000		3,000,000	
지정 종교	당기	5,000,000			5,000,000
	'15년이월	4,000,000		4,000,000	
	'18년이월	3,000,000		200,000	2,800,000
합 계		50,000,000		40,200,000	7,800,000

(2)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액(예시) : 세액 7,950,000원

※ 세액공제가능액 = 산출세액 - (적용순서의 세액감면 ~ 월세액 세액공제까지의 합계)  
 = 10,000,000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3)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액(7,950,000원) 까지의 세액공제액을 계산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제금액	공제율	세액공제액	공제초과 이월액
법정	당기	5,000,000	5,000,000	15%	750,000	
	'15년이월	3,000,000	3,000,000	15%	450,000	
	'18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우리사주		18,000,000	18,000,000	30%	5,400,000	
지정 종교외	당기	3,000,000	0	30%	0	3,000,000
	'15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18년이월	3,000,000	2,500,000	30%	750,000	500,000
지정 종교	'15년이월	4,000,000	0	-	0	4,000,000
	'18년이월	200,000	0	-	0	200,000
합 계		40,200,000	32,500,000		7,950,000	7,700,000

(4) 이월액 = 15,500,000원(한도초과이월액 7,800,000원, 공제 초과이월액 7,700,000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17.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0.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15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을 90% 적용
-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  
= {500,000원 × (30,000,000/30,000,000 × 90%)} = 45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비율\*)  
= 275,000원 × (1 - 450,000/500,000) = 27,500원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Q-2) 2017년 5월에 취업한 33세의 청년의 2020년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A-2)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므로 2018.1.1.부터 2022.5.31.(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만, 2017년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Q-3) 감면대상기간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 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청년)의 경우 감면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는지?

A-3)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

구분	입력 금액			최저 사용 금액	공제 비율			공제 제외 금액	공제 가능 금액	공제 한도	일반 공제 금액	추가 공제 금액	최종 공제 금액
	3월 사용액	4~7월 사용액	그 외 사용액		3월 사용액	4~7월 사용액	그 외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총 급여액 ×25%	30%		15%	아래 참조*1	(㉠×15%(3월 사용액 30%, 4~7월 사용액 80%)) + (㉡+㉢)×30% (3월 사용액 60%, 4~7월 사용액 80%) + (㉣+㉤)×40% (3~7월 사용액 80%) - 공제 제외 금액	아래 참조*2	min [공제 가능 금액, 공제 한도]	아래 참조*3	일반 공제 금액 + 추가 공제 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60%		30%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80%							
㉣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40%						
㉤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80%								

\*1 [공제 제외 금액] 산출 방법

구분	계산식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가+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 100분의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 100분의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나)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 × 100분의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다)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다+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 100분의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나) × 100분의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다)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다)) × 100분의 6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다+라)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 100분의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나) × 100분의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다) × 100분의 4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라) × 100분의 6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나+다+라)) × 100분의 8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
-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2 [공제 한도]

총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 1억2천만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30만원

\*3 [추가공제금액] 산출방법 = ( ① + ② + ③ )

① 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 한도(음수이면 "0"), ㉠ 전통시장이용분×40% (3~7월 사용분 80%), 100만원}
② 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 한도 - ①, ㉡ 대중교통이용분×40%(3~7월 사용분 80%), 100만원}
③ 도서· 공연 등 추가공제금액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 한도- ①-②,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30%(3월 사용분 60%, 4~7월 사용분 80%), 100만원}





사례

【문】 총급여액 4,8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

○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2,600만원 사용)

구 분	사용금액 (공제율)			
	3월 사용액	4~7월 사용액	그 외 사용액	합 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500만원 (30%)	-	500만원 (15%)	1,000만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	500만원 (80%)	500만원 (30%)	1,000만원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100만원 (80%)		100만원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100만원 (80%)		200만원 (40%)	300만원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100만원 (80%)	100만원 (40%)	200만원

【해설】

-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600만원이 총급여의 25%(1,200만원)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850만원
  - 전통시장사용분 = (100만원 × 80%) + (200만원 × 40%) = 160만원
  - 대중교통이용분 = (100만원 × 80%) + (100만원 × 40%) = 120만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100만원 × 80%) = 80만원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500만원 × 80%) + (500만원 × 30%) = 550만원
  - 신용카드사용분 = (500만원 × 30%) + (500만원 × 15%) = 225만원
  -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가)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가+나))  
= 500만원 × 15% + [최저사용금액(1,200만원) - 500만원] × 30% = 285만원
- 공제 한도 = 610만원
 
$$= \min(330\text{만원}, \text{총급여} \times 20\%) + \min(\text{한도초과액}^{\ast 1}, \text{전통시장} \times 40\% (3\sim 7\text{월분 } 80\%), 100\text{만원})$$

$$+ \min(\text{한도초과액}^{\ast 2}, \text{대중교통} \times 40\% (3\sim 7\text{월분 } 80\%) \times 40\%, 100\text{만원}) + \min(\text{한도초과액}^{\ast 3}, \text{도서공연} \times 30\% (3\text{월 사용분 } 60\%, 4\sim 7\text{월 사용분 } 80\%), 100\text{만원})$$

$$= 330\text{만원} + \min(520\text{만원}, 160\text{만원}, 100\text{만원}) + \min(420\text{만원}, 120\text{만원}, 100\text{만원}) + \min(320\text{만원}, 80\text{만원}, 100\text{만원}) = 610\text{만원}$$

\*1 : 850만원(공제가능금액) - 330만원(공제 한도액) = 520만원  
 \*2 : 850만원 - 330만원(공제 한도액)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420만원  
 \*3 : 850만원 - 3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대중교통 추가공제액) = 320만원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거주자성명	생년월일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1 소계 (⑥+⑨+⑫+⑮+⑱+⑳)	⑥ 신용카드 (3월)	⑨ 직불·선불카드등 (3월)	⑫ 현금영수증 (3월)	⑮ 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3월)	⑱ 전통시장 사용분 (3월)	⑳ 대중교통 이용분 (3월)
					⑤-2 소계 (⑦+⑩+⑬+⑯+⑲+㉑)	⑦ 신용카드 (4~7월)	⑩ 직불·선불카드등 (4~7월)	⑬ 현금영수증 (4~7월)	⑯ 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4~7월)	⑲ 전통시장 사용분 (4~7월)	㉑ 대중교통 이용분 (4~7월)
					⑤-3 소계 (⑧+⑪+⑭+⑰+⑳+㉒)	⑧ 신용카드 (그 외)	⑪ 직불·선불카드등 (그 외)	⑭ 현금영수증 (그 외)	⑰ 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그 외)	㉒ 전통시장 사용분 (그 외)	㉓ 대중교통 이용분 (그 외)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㉔ 신용카드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⑥×30%)	㉕ 신용카드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⑦×80%)	㉖ 신용카드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⑧×15%)	㉗ 직불카드등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⑨+⑫)×60%	㉘ 직불카드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⑩+⑬)×80%	㉙ 직불카드등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⑪+⑭)×30%	㉚ 도서·공연등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⑮×60%)	㉛ 도서·공연등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⑱×80%)	㉜ 도서·공연등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⑰×30%)
㉝ 전통시장 사용분(3월) 공제금액 (⑱×80%)	㉞ 전통시장 사용분(4~7월) 공제금액 (⑲×80%)	㉟ 전통시장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⑳×40%)	㊱ 대중교통 사용분(3월) 공제금액 (㉑×80%)	㊲ 대중교통 사용분(4~7월) 공제금액 (㉒×80%)	㊳ 대중교통 사용분(그 외) 공제금액 (㉓×40%)	㉟ 공제제외금액 계산		
						㉟-1 총급여	㉟-2 최저사용금액 [(㉟-1)×25%]	㉟-3 공제제외금액
㊴ 공제가능금액 [㉔~㉝ 합계 - (㉟-3)]	㊵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㉟-1)×20% 중 적은 금액]	㊶ 일반 공제금액 (㊴와 ㊵ 중 적은 금액)	㊷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㊴ > ㊵인 경우에 ㊴-㊵와 ㉝+㉞+㉟ 중 적은 금액]	㊸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㊴ > ㊵인 경우에 ㊴-㊵와 ㉞+㉟+㊲+㊳(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㊹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금액 [㊴ > ㊵인 경우에 ㊴-㊵와 ㉚+㉛+㉜(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㊺ 최종 공제금액 (㊶+㊷+㊸+㊹)		

㉔-3 계산

구분	계산식	㉔-3
$⑧ \geq (㉔-2)$	$(㉔-2) \times 15\%$	
$⑥ + ⑧ + ⑪ + ⑭ + ⑰ \geq (㉔-2) > ⑧$	$⑧ \times 15\% + \{(㉔-2) - ⑧\} \times 30\%$	
$\frac{⑥ + ⑧ + ⑪ + ⑭ + ⑰ + ⑳ + ㉓}{⑥ + ⑧ + ⑪ + ⑭ + ⑰} \geq (㉔-2) >$	$⑧ \times 15\% + (⑥ + ⑪ + ⑭ + ⑰) \times 30\% + \{(㉔-2) - (⑥ + ⑧ + ⑪ + ⑭ + ⑰)\} \times 40\%$	
$\frac{⑥ + ⑧ + ⑨ + ⑪ + ⑫ + ⑭ + ⑮ + ⑰ + ⑳ + ㉓}{⑥ + ⑧ + ⑪ + ⑭ + ⑰ + ㉓} \geq (㉔-2) >$	$⑧ \times 15\% + (⑥ + ⑪ + ⑭ + ⑰) \times 30\% + (㉓) \times 40\% + \{(㉔-2) - (⑥ + ⑧ + ⑪ + ⑭ + ⑰ + ㉓)\} \times 60\%$	
$(㉔-2) > \frac{⑥ + ⑧ + ⑨ + ⑪ + ⑫ + ⑭ + ⑮ + ⑰ + ⑳ + ㉓}{⑥ + ⑧ + ⑨ + ⑪ + ⑫ + ⑭ + ⑮ + ⑰ + ㉓}$	$⑧ \times 15\% + (⑥ + ⑪ + ⑭ + ⑰) \times 30\% + (㉓) \times 40\% + \{(㉔-2) - (⑥ + ⑧ + ⑨ + ⑪ + ⑫ + ⑭ + ⑮ + ⑰ + ㉓)\} \times 8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란에서 차감하고 "㉑~㉓ 대중 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 ⑥ ~ ⑭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나. "⑥ ~ ⑧ 신용카드"란, "⑨~⑪ 직불·선불카드등"란, "⑮~⑰ 도서·공연등사용분"란, "⑱~⑳ 전통시장사용분"란, "㉑~㉓ 대중교통이용분"란은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다. "⑫~⑭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 이하인 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20년 3월분, '20년 4~7월분, 그 외 기간('20년 1~ 2월, '20년 8~ 12월)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⑫~⑭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㉔-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㉑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④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2020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	구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 [33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8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23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1. [공통] 전산매체 파일 길이 변경

- A~I레코드: 1,893바이트(2019년 귀속: 2,082바이트)

#### 2. [소득자(근로자)] 종교관련종사자여부 항목 오류기준 추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1:여, 2:부	2.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C19] = '1' 이면 오류

#### 3. [비과세소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귀속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9	C60, D49 ⑱-31 U01-벤처 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소득 -한도: 연 2,000만원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U01) > 2,000만원 이면 오류
2020	C61, D4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소득 -한도: 연 3,000만원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U01) > 3,000만원 이면 오류

#### 4. [감면소득]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감면 항목 추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7, D55 ⑱-35 T50-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의 소득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50%	1.[C67]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67] ≠ 0 이면 오류 3.감면기간([C24], [C25])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C67] ≠ 0 이면 오류 4.산출세액([C117]) > 0 이고, [C119] = 0인 경우: [C67] ≠ 0 이면 오류

#### ▷ 관련변경: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감면 금액 합산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4 ⑱-12 T01- 외국인기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소득 -한도: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 하여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5.세액감면(조특법)이 있는데([C119] > 0): ([C64] + [C65] + [C66] + [C67]) + {모든 중(전) [D52] + [D53] + [D54] + [D55]의 합} = 0 이면 오류
C75, D63 ⑳-1 감면소득 계	[항목64+항목65+항목66+항목67+항목68+ 항목69]	2.[C75] ≠ [C64 + C65 + C66 + C67 + C68 + C69] 이면 오류 3.{[C64] + [C66] + [C67] + [C68] + [C69]} + {모든 중(전)의 [D52] + [D54] + [D55] + [D56] + [D57]} > [C76] 이면 오류
C119 ㉑ 조특법(㉒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㉒ 제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2.([C64] + [C65] + [C66] + [C67]) + {모든 중(전)의 [D52] + [D53] + [D54] + [D55]의 합} = 0인 경우: [C119] ≠ 0 이면 오류 3.[C119] > ① + ② + ③ + ④ 이면 오류 ① = [C117] × ([C64] + {모든 중(전)의 [D52]의 합}) / [C76] × 50% ② = ([C117] - [C120]) × ([C65] + {모든 중(전)의 [D53]의 합}) / [C76] × 50% ③ = [C117] × ([C66] + {모든 중(전)의 [D54]의 합}) / [C76] × 50% ④ = [C117] × ([C67] + {모든 중(전)의 [D55]의 합}) / [C76] × 50%

5. [감면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류체크 강화

귀속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20	C68a	⑱-26 T1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고령자, 장애인, 청년	5. {[C68b]+[C68c]} + {모든 종(전)의 [D56b]+[D56c]의 합} > 0 인 경우: [C68a] + {모든 종(전)의 [D56a]의 합} ≠ 0 이면 오류
2019	C66b	⑱-27 T1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5.[C66b] + {모든 종(전)의 [D55b]의 합} > 0 인 경우: [C66c] + {모든 종(전)의 [D55c]의 합} ≠ 0 이면 오류
2020	C68b			5. {[C68a]+[C68c]} + {모든 종(전)의 [D56a]+[D56c]의 합} > 0 인 경우: [C68b] + {모든 종(전)의 [D56b]의 합} ≠ 0 이면 오류
2019	C66c	⑱-32 T1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청년	5.[C66c] + {모든 종(전)의 [D55c]의 합} > 0 인 경우: [C66b] + {모든 종(전)의 [D55b]의 합} ≠ 0 이면 오류
2020	C68c			5. {[C68a]+[C68b]} + {모든 종(전)의 [D56a]+[D56b]의 합} > 0 인 경우: [C68c] + {모든 종(전)의 [D56c]의 합} ≠ 0 이면 오류

6. [정산명세]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설정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77	⑳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㉑ 총급여액</th> <th>㉒ 근로소득공제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 4,500만원</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 1억원</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td> </tr> </tbody> </table> -공제한도: 2,000만원	㉑ 총급여액	㉒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3.[C77] > 2,000만원 이면 오류
㉑ 총급여액	㉒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7.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표제출 차단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93 ⑬	㉔-㉕ 주택자금_ 주택임차차입금_ 원리금상환액_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단독 세대주도 가능)	5.[C76] > 5,000만원인 경우: {월세·거주자 주택임차차입금명세(G레코드)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명세 원리금상환액계 합계} > 0 이면 오류
C104	㉙-㉚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 청약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6.[C76] > 7,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청약저축(소득공제구분='31') 자료가 존재하면 오류
C105	㉙-㉚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_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액	6.[C76] > 7,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구분='32') 자료가 존재하면 오류
C111	㉞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공제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자	5.[C76] > 8,000만원인 경우: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F레코드)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구분='51') 자료가 존재하면 오류
C148 ㉟	㉞ 월세세액공제 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로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5.[C76] > 7,000만원인 경우: {월세·거주자 주택임차차입금명세(G레코드)의 연간 월세액 합계} > 0 이면 오류

8. [근무처별 소득명세-종(전)] 소득명세합계 항목 오류기준 추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D23 ⑮	계	종전근무처의 소득 합계 ·급여 + 상여 + 인정상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우리스주조합인출금 + 임원 퇴직 소득 한도 초과액 + 직무발명보상금	3.[D23] = 0 인 경우: [D62] = 0 이면 오류



9.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08 ④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p>■19년 귀속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p> <p>·소득공제율:총급여 25% 초과사용에 대해</p> <table border="1" data-bbox="438 779 794 1106"> <thead> <tr> <th>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th> <th>소득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직불카드등</td> <td>30%</td> </tr> <tr> <td>현금영수증</td> <td>30%</td> </tr> <tr> <td>도사·공연등 사용분</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 사용분</td> <td>40%</td> </tr> <tr> <td>대중교통 이용분</td> <td>40%</td> </tr> </tbody> </table>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등	30%	현금영수증	30%	도사·공연등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p>5.[C108] &gt;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값} 이면 오류</p> <p>※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값=소득·세액 공제명세(표제코드)의 본인(관계코드=0), 배우자(관계코드=3) 및 직계존비속(관계코드=1,2,4,5)의 MIN(⑮, ⑯)+⑰+⑱+⑲ 계산값의 합계</p> <p>① 전통시장 3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전통시장 3월~7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80%</p> <p>② 대중교통 3월~7월 이용분 공제금액 = 대중교통 3월~7월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80%</p> <p>③ 도서공연등 4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4월~7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80%</p> <p>④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4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4월~7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80%</p> <p>⑤ 신용카드 4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4월~7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80%</p> <p>⑥ 도서공연등 3월 사용분 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3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60%</p> <p>⑦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3월 사용분 공제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3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60%</p> <p>⑧ 전통시장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전통시장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40%</p> <p>⑨ 대중교통 1월~2월, 8월~12월 이용분 공제금액 = 대중교통 1월~2월, 8월~12월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40%</p> <p>⑩ 도서공연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30%</p> <p>⑪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p> <p>⑫ 신용카드 3월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3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p> <p>⑬ 신용카드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5%</p> <p>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 최저사용금액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경우: ⑭ = 최저사용금액 × 15%</p> <p>·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lt; 최저사용금액 ≤ 15%+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⑬)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최저사용금액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30%</p> <p>· 15%+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⑬) &lt; 최저사용금액 ≤ 15%+30%+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⑩+⑪+⑫+⑬)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 × 30% + [최저사용금액 - {15%+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⑬)}] × 40%</p> <p>· 15%+30%+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⑩+⑪+⑫+⑬) &lt; 최저사용금액 ≤ 15%+30%+40%+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⑧+⑨+⑩+⑪+⑫+⑬)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 × 30% + 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 × 40% + [최저사용금액 - {15%+30%+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⑩+⑪+⑫+⑬)}] × 60%</p> <p>· 15%+30%+40%+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⑧+⑨+⑩+⑪+⑫+⑬) &lt; 최저사용금액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 × 30% + 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 × 40% + 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 × 60% + [최저사용금액 - {15%+30%+40%+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⑧+⑨+⑩+⑪+⑫+⑬)}] × 80%</p>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등	30%																							
현금영수증	30%																							
도사·공연등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p>■20년 귀속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p> <p>·소득공제율:총급여 25% 초과사용에 대해</p> <table border="1" data-bbox="438 1272 866 1641"> <thead> <tr> <th>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th> <th>3월</th> <th>4월~7월</th> <th>그 외 사용액</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d rowspan="6">80%</td> <td>15%</td> </tr> <tr> <td>직불카드등</td> <td>60%</td> <td>30%</td> </tr> <tr> <td>현금영수증</td> <td>60%</td> <td>30%</td> </tr> <tr> <td>도사·공연등 사용분</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 사용분</td> <td>80%</td> <td>40%</td> </tr> <tr> <td>대중교통 이용분</td> <td>80%</td> <td>40%</td> </tr> </tbody> </table>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3월	4월~7월	그 외 사용액	신용카드	30%	80%	15%	직불카드등	60%	30%	현금영수증	60%	30%	도사·공연등 사용분	60%	30%	전통시장 사용분	80%	40%	대중교통 이용분	80%	40%	<p>5.[C108] &gt;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값} 이면 오류</p> <p>※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값=소득·세액 공제명세(표제코드)의 본인(관계코드=0), 배우자(관계코드=3) 및 직계존비속(관계코드=1,2,4,5)의 MIN(⑮, ⑯)+⑰+⑱+⑲ 계산값의 합계</p> <p>① 전통시장 3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전통시장 3월~7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80%</p> <p>② 대중교통 3월~7월 이용분 공제금액 = 대중교통 3월~7월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80%</p> <p>③ 도서공연등 4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4월~7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80%</p> <p>④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4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4월~7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80%</p> <p>⑤ 신용카드 4월~7월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4월~7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80%</p> <p>⑥ 도서공연등 3월 사용분 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3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60%</p> <p>⑦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3월 사용분 공제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3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60%</p> <p>⑧ 전통시장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전통시장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40%</p> <p>⑨ 대중교통 1월~2월, 8월~12월 이용분 공제금액 = 대중교통 1월~2월, 8월~12월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40%</p> <p>⑩ 도서공연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 30%</p> <p>⑪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p> <p>⑫ 신용카드 3월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3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p> <p>⑬ 신용카드 1월~2월, 8월~12월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1월~2월, 8월~12월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5%</p> <p>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 최저사용금액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경우: ⑭ = 최저사용금액 × 15%</p> <p>·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lt; 최저사용금액 ≤ 15%+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⑬)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최저사용금액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30%</p> <p>· 15%+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⑬) &lt; 최저사용금액 ≤ 15%+30%+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⑩+⑪+⑫+⑬)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 × 30% + [최저사용금액 - {15%+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⑬)}] × 40%</p> <p>· 15%+30%+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⑩+⑪+⑫+⑬) &lt; 최저사용금액 ≤ 15%+30%+40%+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⑧+⑨+⑩+⑪+⑫+⑬)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 × 30% + 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 × 40% + [최저사용금액 - {15%+30%+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⑩+⑪+⑫+⑬)}] × 60%</p> <p>· 15%+30%+40%+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⑧+⑨+⑩+⑪+⑫+⑬) &lt; 최저사용금액 경우: ⑭ = 15% 공제율 적용금액(⑬) × 15% + 30% 공제율 적용금액(⑩+⑪+⑫) × 30% + 40% 공제율 적용금액(⑧+⑨) × 40% + 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 × 60% + [최저사용금액 - {15%+30%+40%+60% 공제율 적용금액(⑥+⑦+⑧+⑨+⑩+⑪+⑫+⑬)}] × 80%</p>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3월	4월~7월	그 외 사용액																					
신용카드	30%	80%	15%																					
직불카드등	60%		30%																					
현금영수증	60%		30%																					
도사·공연등 사용분	60%		30%																					
전통시장 사용분	80%		40%																					
대중교통 이용분	80%		40%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08	④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b>■19년 귀속 신용카드등 공제한도</b>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⑮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MAX(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 0) ⑯ [C76] ≤ 7천만원인 경우: MIN(330만원, [C76] × 20%) [C76] > 7천만원, [C76] ≤ 1.2억원인 경우: 280만원 [C76] > 1.2억원: 230만원 ⑰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금액 ·(⑮ - ⑯) ≤ 0 인 경우: ⑰ = 0 ·(⑮ - ⑯) > 0 인 경우: ⑰ = MIN{(⑮-⑯), ①+⑧, 100만원} ⑱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금액 ·(⑮ - ⑯ - ⑰) ≤ 0 인 경우: ⑱ = 0 ·(⑮ - ⑯ - ⑰) > 0 인 경우: ⑱ = MIN{(⑮-⑯-⑰), ②+⑨, 100만원} ⑲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추가공제 금액 ·(⑮ - ⑯ - ⑰ - ⑱) ≤ 0 인 경우: ⑲ = 0 ·(⑮ - ⑯ - ⑰ - ⑱) > 0 인 경우: ⑲ = MIN{(⑮-⑯-⑰-⑱), ③+⑥+⑩, 10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⑳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td> </tr> <tr> <td>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td> <td>2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⑳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⑳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td> <td>1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d>100만원</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b>■20년 귀속 신용카드등 공제한도</b>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㉑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td> </tr> <tr> <td>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td> <td>28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body> </table>	㉑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㉑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td> <td>1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d>100만원</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최대 63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관련변경: [소득·세액 공제명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입력방법 변경

귀속	항목명		항 목 설 명	입력방법
2019	E29~E3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부양가족1	국세청 자료의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47~E52			국세청 자료 외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76~E82		부양가족2	국세청 자료의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94~E99			국세청 자료 외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123~E129		부양가족3	국세청 자료의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141~E146			국세청 자료 외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170~E176		부양가족4	국세청 자료의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188~E193			국세청 자료 외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217~E223		부양가족5	국세청 자료의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E235~E240			국세청 자료 외 1년 동안의 사용금액을 입력
2020	E29~E4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부양가족1	국세청 자료의 사용금액을 기간별로(3월, 4월~7월, 그 외)구분하여 입력
	E58~E72			국세청 자료 외 사용금액을 기간별로(3월, 4월~7월, 그 외)구분하여 입력
	E96~E113		부양가족2	국세청 자료의 사용금액을 기간별로(3월, 4월~7월, 그 외)구분하여 입력
	E125~E139			국세청 자료 외 사용금액을 기간별로(3월, 4월~7월, 그 외)구분하여 입력
	E163~E180		부양가족3	국세청 자료의 사용금액을 기간별로(3월, 4월~7월, 그 외)구분하여 입력
	E192~E206			국세청 자료 외 사용금액을 기간별로(3월, 4월~7월, 그 외)구분하여 입력

▷ 관련변경: [소득·세액 공제명세] 공란 항목 삭제

귀속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9	E33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50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80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97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127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144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174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191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221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238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10. [특별세액공제]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귀속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9	C122 a		4.[C122a]+[C123a]+MIN([C124a], 400만원) >700만원 이면 오류
2020	C128 a	⑤7 연금계좌_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_공제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C76] ≤ 1억2천만원인 경우: -50세 미만일 경우: [C128a]+[C129a]+[C130a] > 700만원 이면 오류 -50세 이상일 경우: [C128a]+[C129a]+[C130a] > 900만원 이면 오류 5.[C76] > 1억2천만원인 경우: [C128a]+[C129a] +[C130a] > 700만원 이면 오류
2019	C123 a		4.[C122a]+[C123a]+MIN([C124a], 400만원) >700만원 이면 오류
2020	C129 a	⑤8 연금계좌_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_공제대상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C76] ≤ 1억2천만원인 경우: -50세 미만일 경우: [C128a]+[C129a]+[C130a] > 700만원 이면 오류 -50세 이상일 경우: [C128a]+[C129a]+[C130a] > 900만원 이면 오류 5.[C76] > 1억2천만원인 경우: [C128a]+[C129a] +[C130a] > 700만원 이면 오류
2019	C124 a		4.[C70] ≤ 1억2천만원인 경우:[C124a] > 400만원 이면 오류 [C70] > 1억2천만원인 경우:[C124a] > 300만원 이면 오류 5.[C122a]+[C123a]+MIN([C124a], 400만원) >700만원 이면 오류
2020	C130 a	⑤9 연금계좌_연금저축_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4.[C76] ≤ 1억2천만원인 경우: -50세 미만일 경우: [C130a] > 400만원 이면 오류 -50세 이상일 경우: [C130a] > 600만원 이면 오류 5.[C76] > 1억2천만원인 경우: [C130a] > 300 만원 이면 오류

▷ 관련변경: [연금저축등 공제명세]소득·세액공제금액 변경된 한도 적용

귀속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2019	F12	·소득·세액 공제금액 수록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계좌 공제(연금저축)는 세액공제금액 기재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청약, 주택청약종합,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소득공제금액 기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는 소득공제금액 입력 불필요) ※ 예) 5,000,000 →'0005000000'	2.공제금액 > {소득공제구분별 공제금액 계산값 <sup>1)</sup> } 이면 오류 ① 퇴직연금소득세액공제(소득공제구분='11','12')인 경우: MIN(납입금액,700만원)×12%(총급여[C70]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③ 연금저축계좌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구분='22')인 경우: MIN(납입금액,400만원)×12%(총급여[C70]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020	F12		2.공제금액 > {소득공제구분별 공제금액 계산값 <sup>1)</sup> } 이면 오류 ① 퇴직연금소득세액공제(소득공제구분='11','12')인 경우: MIN(납입금액,900만원)×12%(총급여[C76]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③ 연금저축계좌공제(연금저축, 소득공제구분='22')인 경우: MIN(납입금액,600만원)×12%(총급여[C76]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인소득 피면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자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총(전)	총(전)	⑩-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
	⑫ 감면기간	~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별명보상금						
	⑯ 계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구 분	MOX	OOX	QOX	HOX					
	⑱ 국외근로									
	⑱-1 야간근로수당									
	⑱-2 출산·보육수당									
	⑱-4 연구보조비									
	⑱-5									
	⑱-6									
	~									
	⑱-35									
	⑲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명 세	구 분	⑳ 소 득 세	㉑ 지방소득세	㉒ 농어촌특별세
	㉓ 결정세액			
	기 납부 세액	㉔ 종(전)근무지 사업자 (결정세액란의 등록 세액을 적습니다) 번호		
		㉕ 주(현)근무지		
		㉖ 납부특례세액		
	㉗ 차 감 징 수 세 액 (㉓-㉔-㉕-㉖)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IV 정 산 명 세	②① 총급여(①⑥,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④⑧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② 근로소득공제		④⑨ 산출세액					
	②③ 근로소득금액		⑤⑩ 「소득세법」					
	기본공제	②④ 본 인		세액감면	⑤① 「조세특례제한법」 (⑤② 제외)			
		②⑤ 배우자			⑤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②⑥ 부양가족(명)			⑤③ 조세조약			
	추가공제	②⑦ 경로우대(명)		⑤④ 세액감면계	⑤⑤ 근로소득			
		②⑧ 장애인(명)						
		②⑨ 부녀자						
		③⑩ 한부모가족						
	연금보험료공제	③① 국민연금보험료		⑤⑥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출산·입양자 (명)			
		공연보 료공제	③② 지급 보 료공제	가 공무원연금	연 금 계 좌	⑤⑦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나 군인연금		공제대상금액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세액공제액		
				라 별정우체국연금		공제대상금액		
		보 험 료	③③	가 건강보험료(노인장 기요양보험료포함)	⑥① 보험료	보장성		
				나 고용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다 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공제대상금액	
				라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세액공제액
	특 별 소 득 공 제	③④	가 주택임차차입 금원리금상환액	나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공제대상금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10년 ~15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③⑤ 기부금(이월분)					⑥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③⑥ 계						세액공제액		
③⑦ 차감소득금액		세 액 공 제	특 별 세 액 공 제	⑥③ 기 부 금	가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③⑧ 개인연금저축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③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나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④①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액			
가 청약저축				라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액			
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금액			
④② 투자조합출자 등				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세액공제액			
④③ 신용카드등 사용액				⑥④ 계				
④④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⑥⑤ 표준세액공제				
④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⑥⑥ 납세조합공제						
④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⑥⑦ 주택차입금						
④⑦ 그 밖의 소득공제계		⑥⑧ 외국납부						
④⑧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⑥⑨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⑦① 결 정 세 액 (④⑨-⑤④-⑦①)						
		⑧① 실 효 세 율 (%) (⑦①/②①)×1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㉗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부녀 자	한부 모				장 애 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계											
						기타 계											
	0 (근로자 본인)		○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사용 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3월							
	4~7월 그 외							
기타 계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㉑ 근로처명"란 및 "㉒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로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제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㉓-1에서 여1을 선택하고, ㉓-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 근로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㉒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㉒-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㉒-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㉒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로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직접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㉒ 총급여"란에는 "㉒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㉒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㉓~㉕)"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㉓~㉔)"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㉕~㉗)"란과 "특별세액공제(㉒~㉔)"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10.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㉓ 주택자금공제(㉗+㉘), ㉓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㉗+㉘+㉙), ㉔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㉓ 차감소득금액에서 ㉔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㉔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㉔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㉔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㉔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 사. 의료비(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 차임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㉔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 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㉔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를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0년 3월분, ② '20년 4~7월분, ③ 그 외 기간('20년 1~2월분, '20년 8~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2. 도서·공연·박물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
23.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㉘-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소득세법 § 12 3 자	H01	㉘-9	소득령 § 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㉘-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㉘-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㉘-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㉘-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㉘-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㉘-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㉘-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㉘-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㉘-6	소득령 § 12 14 (취재수당)	○
		H12	㉘-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H13	㉘-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㉘-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㉘-30	소득령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 12 3 차	I01	㉘-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㉘-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 12 3 거	M01	㉘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㉘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㉘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O01	㉘-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Q01	㉘-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㉘-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어	R11	㉘-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 15	S01	㉘-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㉘-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 88의4⑥	Y02	㉘-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㉘-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㉘-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Y22		㉙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 18	T01	㉘-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특법 § 19	T30	㉘-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 § 29조의6	T40	㉘-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조특법 § 18조의3	T50	㉘-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특법 § 30	T11	㉘-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
		T12	㉘-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㉘-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㉘-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 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 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 (상 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㉙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㉗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 작성 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㉖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㉚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관리 번호		<b>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b>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자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⑮ 계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⑮ 국외근로	MOX		
	⑮-1 야간근로수당	OOX		
	⑮-2 출산·보육수당	QOX		
	⑮-4 연구보조비	HOX		
	⑮-5			
	⑮-6			
	~			
	⑮-34			
	⑮ 수련보조수당	Y22		
	⑲ 비과세소득 계			
⑲-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계 산	⑳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㉑		㉗ 소 득 세	
	㉒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㉘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㉔ 외국납부 ㉕ 납세조합 [(㉓-㉔) × 10/100]		㉙ 농어촌특별세
	㉖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납세조합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 방법

-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b>① 인적사항</b>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기부 명세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⑬ 합계 (⑭+⑮)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⑮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⑯ 기타
⑦ 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 40, 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mm × 297mm(백상지 80g/m<sup>2</sup>)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다.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 라.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⑨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⑬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⑮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⑯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참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 제출 오류

- 레코드 길이 오류가 많음
  - 2020년 귀속은 1,893바이트임
- 레코드 구성과 순서를 정확하게 구현
  - A(제출자) B(원천징수의무자) C(주현) D(종전) E(소득공제명세) F(연금저축등) G(월세액등) H(기부금조정명세) I(해당연도기부명세)
  - 하나의 레코드에 종속되는 정보를 다른 레코드에 종속시키면 안됨
- 금액, 세액 항목 등에 숫자만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에 반영
- 성명, 상호 등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레코드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 한글, 영문, 숫자, (), Space 만 가능
- 전화번호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 원천징수의무자 및 제출자가 사업자등록번호(10)로 되어 있는지 확인바람
  -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인 경우는 극히 미미

### (안내문구)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문구 삽입바람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전산매체 수록 불가(오류로 판단)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입력해야함
  -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문구 필요
- 중복제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오류 및 중복제출 방지 안내문 예시》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복 제출
  - 홈택스,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중복 제출
  - 홈택스 부서사용자ID 등 다른 ID로 중복 제출
  - 수시분으로 제출하고 연간합산분으로 다시 중복 제출
  
-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했다면 세금신고 삭제(또는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로 이중자료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오류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반드시 입력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가 중복공제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 Ⅲ.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1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주(현) 소득발생처 레코드 변경사항

#### 1.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연금계좌 세액 공제 금액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설명																
2019		<p>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p> <p>· 납입액 한도 : 7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 단,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p> <p>* 다만,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소득금액[C33]</th> <th>세액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0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4,000만원 초과</td> <td>12%</td> </tr> </tbody> </table>	사업소득금액[C33]	세액공제율	4,000만원 이하	15%	4,000만원 초과	12%										
사업소득금액[C33]	세액공제율																	
4,000만원 이하	15%																	
4,000만원 초과	12%																	
	C62 ④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																	
2020		<p>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p> <p>* 다만,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사업소득금액[C33]</th> <th colspan="2">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 한도(퇴직연금합산시 한도)</th> <th rowspan="2">공제율</th> </tr> <tr>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 rowspan="2">400만원(700만원)</td> <td rowspan="2">600만원(9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12%</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 colspan="2">300만원(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제외</p>	사업소득금액[C33]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 한도(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4천만원 이하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300만원(700만원)		
사업소득금액[C33]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 한도(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4천만원 이하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300만원(700만원)																	

## 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인원 항목설명 변경

구분	항목명	항목설명
2019	㉔자녀세액공제인원	자녀세액공제인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관계코드 4) 및 위탁아동(관계코드 8)의 인원수 - 만 7세 이상인 자의(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수
2019	C57 ㉔자녀세액공제인원	자녀세액 공제인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관계코드 4) 및 위탁아동(관계코드 8)의 인원수 - 만 7세 이상인 자의 수

관리번호		<b>[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b> <b>[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b> <b>(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b>	소득자 구분		
① 귀속 연도	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정수 의무자	② 법 인 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분	⑭ 법인명(상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발생기간(연·월·일)	⑰ 지급액(수입금액)
	주(현)				
	중(전)				
	사업별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⑱ 수입금액(⑰)	⑲ 적용소득률		⑳ 소득금액			㉑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합계							

㉒ 사업소득금액(⑳)		㉓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㉔ 본인	㉕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㉖ 결정세액	㉗ 지방소득세	㉘ 농어촌특별세	㉙ 계						
		㉕ 배우자						가분세액	㉚ 종(전)근무지				
		㉖ 부양가족(명)								㉛ 주(현)근무지			
	추가공제	㉗ 경로우대(명)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㉜ 차감 납부할 세액		㉝ 소득세	㉞ 지방소득세	㉟ 농어촌특별세
		㉘ 장애인(명)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㉙ 부녀자						㉞ 산출세액					
		㉚ 한부모가족						㉞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명) 6세 이하 (명) 출산·입양자(명)					
		㉛ 연금계좌세액공제						㉟ 정치자금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b>세무서장 귀하</b>				
	㉜ 연금보험료공제	㉜ 기부금 세액공제						㊱ 법정					
㉝ 기부금(이월분)	㉝ 우리시주조합	㊱ 지정											
㉞ 종합소득공제 계	㉞ 표준세액공제	㊱ 지정											
㉟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㉟ 표준세액공제												

㉑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 방법**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정수의무자"란의 "⑥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㉗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 연도	년	<b>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b>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	---	--	----------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 간 총 지급건수	⑥ 연 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⑩ 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득세	⑳ 지방 소득세	㉑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득 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 건별 소득 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득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득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⑫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⑯ 지급건수(소득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 ⑪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940200	화가관련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301	작곡가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2	배우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3	모델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4	가수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원원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득세	⑳ 지방소득세	㉑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귀속  
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국 코 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			⑭ 소득귀속		⑮ 지 급 총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세액이 소액 부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⑰·⑱·⑲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⑫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940200	화가관련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301	작곡가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로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2	배우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3	모델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4	가수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귀속 연도	년
----------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	--

###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촌 특별세	⑬ 계	

###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 소득	㉒ 필요 경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㉕부터 ㉘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㉑(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 ㉑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㉓ 소득금액란은 ㉑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작성방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임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	--

㉒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 소득	㉒ 필요 경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⑥8 비과세 기타소득, ⑥9 분리과세 기타소득, ⑥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⑥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⑥1, ⑥3, ⑥5, ⑦8 제외), ⑥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⑥4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⑥5 직무발명보상금, ⑦1 상금 및 부상 ⑦2 광업권 등 ⑦3 지역권등 ⑦4 주택입주지체상금  
⑦5 원고료등 ⑦6 강연료등 ⑦7 종교인소득 ⑦8 사례금 ⑦9 자문료등 ⑧0 통신판매 대여소득  
⑥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⑥4, ⑥8, ⑥9, ⑦1 ~ ⑦7, ⑦9, ⑧0 제외)

⑩ 지급 연월일			⑪ 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비과세 소득	⑭ 필요 경비	⑮ 소득 금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농어촌 특별세	⑳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징수(보고)의무자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IV.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

###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기타(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종교인이 받은금액</th> <th>필요경비</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80%</td> </tr> <tr> <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 <td>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td> </tr> <tr> <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 <td>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td> </tr> <tr> <td>6천만원 초과</td> <td>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td> </tr> </tbody> </table> <p>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인정</p>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백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백만원 초과 4,500백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p>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p>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백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백만원 초과 4,500백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백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백만원 초과 4,500백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  
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소득금액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人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과세표준				
(×) 세율(6~42%)					
산출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 15%, 25%, 30%)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 3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관련 전산매체 설명자료

#### 1. 레코드 설명

- 각 레코드의 길이는 1000바이트로 제출파일은 A, B, C, D, E, F, G 7개의 레코드로 구성

레코드유형	내 용	길이	비 고
A레코드	제출자 레코드	1000바이트	
B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 레코드	1000바이트	
C레코드	주(현)소득발생처 레코드	1000바이트	
D레코드	종(전)소득발생처 레코드	1000바이트	
E레코드	부양가족공제자명세 레코드	1000바이트	
F레코드	기부금 조정명세 레코드	1000바이트	부속서류로 추가
G레코드	해당연도 기부명세 레코드	1000바이트	부속서류로 추가

#### ○ A레코드(제출자 레코드)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하는 자료의 원천징수의무자 수 등을 수록하며 제출파일 1개당 필히 1개의 레코드를 수록

#### ○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 레코드)

-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제출하는 자료의 건수, 금액 등의 집계를 수록하며,
- A레코드에 수록된 원천징수의무자 수만큼 B레코드를 수록

#### ○ C레코드(주(현)소득발생처 레코드)

- 주(현)소득발생처에서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발생기간, 지급액(수입금액), 당해연도 종교인 소득금액 등을 수록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별 소득자 수만큼 C레코드를 수록

#### ○ D레코드(종(전)소득발생처 레코드)

- 종(전)근무처에서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발생기간, 지급액(수입금액) 등을 수록하며,
- 소득자별 종(전)소득발생처 수만큼 D레코드를 수록

#### ○ E레코드(부양가족공제자명세 레코드)

-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자에 관한 레코드로서 (본인은 표기하지 않음)
- 한 개의 레코드에 12명까지 수록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는 새로운 E레코드를 추가하여 수록

#### ○ F레코드(기부금 조정명세 레코드)

- 해당연도 기부금액과 전년이월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유형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는 레코드로서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수록

#### ○ G레코드(해당연도 기부명세 레코드)

- 해당연도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레코드로서
- 기부유형코드 및 기부처, 기부자별 연간 기부건수와 기부금액을 수록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설명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종교인본인에 한정)	50만원	종교인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종교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종교인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입한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대상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조합·벤처기업출자: 100%·70%·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5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투자 시기</th> <th>투자 구분</th> <th>공제율</th> <th>공제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8년 ~ '20년</td> <td>일반</td> <td>10%</td> <td rowspan="3">종합소득 금액의 50%</td> </tr> <tr> <td rowspan="2">벤처</td> <td>3,000만원 이하분</td> <td>100%</td> </tr> <tr> <td>5,000만원 이하분 5,000만원 초과분</td> <td>70% 30%</td> </tr> </tbody> </table>	투자 시기	투자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18년 ~ '20년	일반	10%	종합소득 금액의 50%	벤처	3,000만원 이하분	100%	5,000만원 이하분 5,000만원 초과분	70% 30%			
투자 시기	투자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18년 ~ '20년	일반	10%	종합소득 금액의 50%																
	벤처	3,000만원 이하분		100%															
5,000만원 이하분 5,000만원 초과분		70% 30%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등”란의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녀 (7세이상자녀)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 감면·세액 공제	연금계좌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종합소득금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rowspan="2">공제율</th> </tr> <tr> <th>50세 미만</th> <th>50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 rowspan="2">400만원(700만원)</td> <td rowspan="2">600만원(9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12%</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 colspan="2">300만원(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300만원(700만원)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300만원(7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 × 1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15%)	종교인이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종교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종교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공제한도 : 종교인소득금액 × 10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공제한도 : (종교인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 100% * 공제한도 : (종교인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 기부금) × 30% * 공제한도 : (종교인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공제한도 : (종교인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공제한도 : (종교인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종교인 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 종교단체외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종교인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한도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종교인소득금액}}{\text{종교인소득금액}}$		

\* 기부금공제금액 및 한도는 근로소득의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액 한도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참고

## 참고자료 / 공제 적용 순서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소득공제
  - : (28) 기부금(이월금) → (30)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31)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7) 연금보험료공제
3. 세액공제
  - : (35) 자녀세액공제 → (37) 기부금 정치자금 → (38) 표준세액공제 → (37) 기부금 법정 → (37) 기부금 우리사주 → (37) 기부금 지정 → (39) 외국납부 세액공제 → (36)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리번호		<b>[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b> <b>[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b> <b>(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b>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① 귀속 연도	년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종교인 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 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 소득
	주(현)		-	-	.	
	중(전)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	------------	--------	-------------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인	가납부세액								
	㉑ 배우자	㉒ 부양가족 (명)					㉓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㉔ 결정세액			
	추가공제	㉕ 경로우대 (명)	㉖ 장애인 (명)	㉗ 부녀자	㉘ 한부모가족	㉙ 종합소득과세표준	㉚ 산출세액	㉛ 중(전)근무지	㉜ 주(현)근무지		
		㉚ 장애인 (명)	㉛ 부녀자	㉜ 한부모가족	㉝ 연금계좌세액공제	㉞ 정치자금	㉟ 차감납부할세액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㉜ 부녀자	㉝ 연금계좌세액공제	㉞ 한부모가족	㉟ 기부금세액공제	㊱ 기부금세액공제	년 월 일				
		㉝ 연금계좌세액공제	㉞ 정치자금	㉟ 한부모가족	㊱ 기부금세액공제	㊲ 기부금세액공제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㉞ 연금보험료공제	㉟ 기부금세액공제	㊱ 기부금세액공제	㊲ 기부금세액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세무서장 귀하						
㉟ 기부금(이월분)	㊱ 표준세액공제	㊲ 표준세액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㊱ 종합소득공제 계	㊲ 표준세액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㊵ 외국납부세액공제							
㊲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㊴ 표준세액공제	㊵ 외국납부세액공제	㊶ 외국납부세액공제							
㊳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표준세액공제	㊵ 표준세액공제	㊶ 외국납부세액공제	㊷ 외국납부세액공제							

㉔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작성 방법

1. 거주지코드와 거주지코드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⑥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㉔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㉕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㉖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㉗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㉘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를 말함(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9.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부금명세서

## ①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득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번호 : )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분	⑦ 유형	⑧ 코드	⑨ 기부 내용	기부처		⑫ 기부자			기부 명세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⑬ 합계 (⑭+⑮)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⑮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⑯ 기타
정치자금	20												

##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분	총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드		10	20	40	41	42	10, 40, 41	50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작성방법

※ 이 서식 제1쪽의 ㉞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㉞ 유형란 및 ㉞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또는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또는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다.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 라.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㉞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㉞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㉞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㉞ 상호(법인명)란과 ㉞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㉞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㉞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㉞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㉞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㉞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㉞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㉞ 기부금액, ㉞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㉞ 공제대상 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3. 12. 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 사.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V.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 소개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 문서 출력, 제출, 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Paperless 연말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이하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연말정산 서류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프로그램」(이하 전자문서 API)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 2 전자문서 API 이용 안내

- 전자문서 API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hometax.go.kr>)에서 하단 자료실이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전자문서API자료실 (로그인 필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반드시 최신 버전의 전자문서 API 적용 요망
- 전자문서API에서 추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의서도 전자문서API와 함께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연말정산」과 「Paperless 연말정산」 비교 >

구 분		종전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
근로자	국세청 간소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등록</li> </ul>
	그 외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종이문서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ul>
	신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수집한 자료를 수동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등록(업로드)과 동시에 연말정산 서류 자동 작성</li> <li>그 외 종이 영수증 자료는 근로자가 수동 입력</li> </ul>
회사	소프트웨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 (API)를 설치</li> </ul>
	영수증 금액 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간 상호 대조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금액 대조 불필요</li> <li>간소화 자료 외 종이 영수증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금액과 상호 대조 필요</li> </ul>
	공제요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별 요건 충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ul>
	종이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근로자 1억 5천장 종이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90억원 종이 사용 비용 절감</li> </ul>
	문서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로 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관</li> <li>그 외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li> </ul>

### 3 전자문서 API 종류

#### □ 위변조 여부 검증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 데이터 추출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추출용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추출 데이터는 XML과 SAM 두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나, 세법 변경에 의한 형식수정 등에 유연한 XML 사용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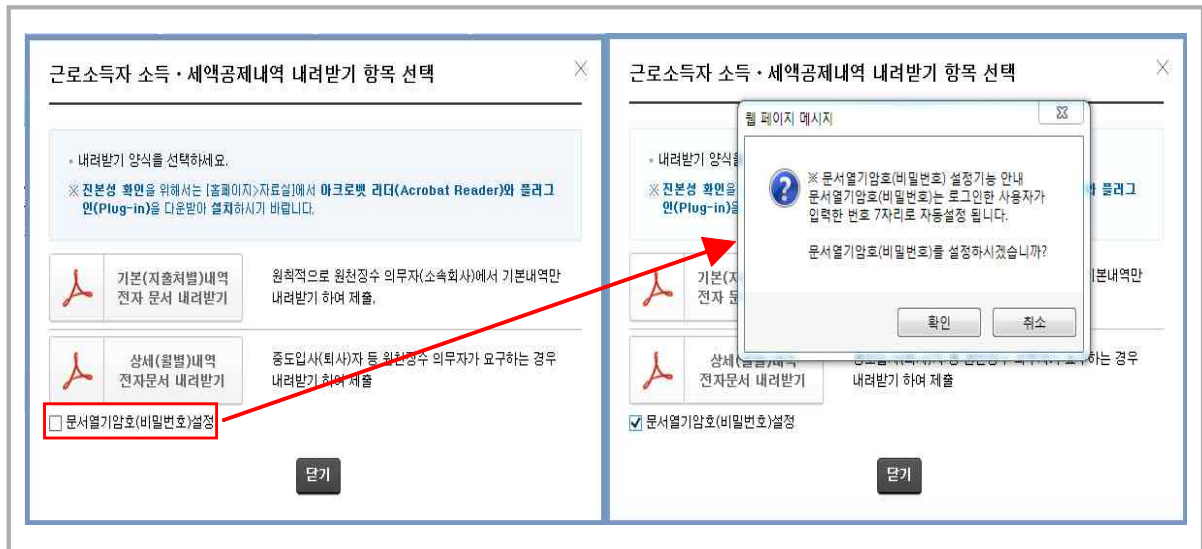
※ XML, SAM 정의서도 [전자문서 API]와 함께 게시



## 4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문서 파일 활용

- 근로소득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시 선택사항으로 문서열기암호 설정 가능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7자리로 설정



- 비밀번호가 설정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는 비밀번호 확인 후 열람 및 데이터(XML or SAM) 추출 가능

## 5 2020년 귀속 전자문서 정의서 변경사항

- 월세액 지급액(J501Y,M) 자료 추가
  - 월세액 자료코드(G0037)
- 실손의료보험금(B201Y,M) 자료 추가
  -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코드(G0040)
- 의료비(B101Y,D)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자료 추가
  - 기존 안경구입비(G0026)의 정의서 변경 없이 자료만 추가로 수집
- 직불카드(G307Y,M)에 직불·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액 자료 추가
  - 기존 직불카드 등(G0014)의 정의서 변경 없이 자료만 추가로 수집

##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 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연말정산 정보\* 제공  
\* 10월중에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제공, 개인별 공제한도 안내,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함께 제공
- 예상세액 자동계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부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반영
- 간편 제출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 클릭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모바일에서는 자주 찾는 메뉴의 공제 신고서 작성을 클릭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 ③ 연말정산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 모바일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 (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 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는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 말 정 산 간 소 화 자 료 선택분 프리 필드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 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위 절차 중 한 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 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 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 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근로소득(세법)	김정열	044-204-3348	kjy6423@nts.go.kr
	전익선	044-204-3349	sunny8801@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김미연	044-204-2504	kmy8675@nts.go.kr
편리한 연말정산	김세라	044-204-2505	sera1004@nts.go.kr
근로소득 직접작성	이세나	044-204-2547	sena1012@nts.go.kr
근로소득 전산매체	정지훈	044-204-2550	chung0815@nts.go.kr
종교인소득	최연하	044-204-2545	choi4115@nts.go.kr
사업소득(연말정산)	오은정	044-204-2549	oej1206@nts.go.kr
사업소득·기타소득	이수미	044-204-2546	sumi4905@nts.go.kr